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786호 2021. 4. 2.(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3호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3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5호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10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79호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근무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2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0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0호 부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4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1호 부안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4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2호 부안3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52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3호 줄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59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4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6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5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6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7호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6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98호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 71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19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3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19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8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8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8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8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8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8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8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9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50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9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51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9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94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3. 29.(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95

시군행정

- 익산시 고시 제2021-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96
- 익산시 공고 제2021-899호 도시계획시설(소로1류805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00
- 익산시 공고 제2021-92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101
- 정읍시 공고 제2021-581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103
- 정읍시 공고 제2021-58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107
- 정읍시 공고 제2021-589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 111
- 남원시 공고 제2021-7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14
- 김제시 고시 제2021-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118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1. 3.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3호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전라북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전문 계열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5.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관리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취업지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교사, 소속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1. 3.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전라북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지원”이란 학생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통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3.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2.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3. 그 밖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통학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초등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포함)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교 시 통학차량이 해당 통학구의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차량 내 어린이 간힘 사고 방지,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컨설팅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임차 차량의 합리적 비용 산정, 학생 통학지원의 구조적 개선 등을 위하여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학교 통학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대규모 도시개발 지구 내 중학생 통학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 제6조8호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으로 개발 지구 내 거주학생이 개발 지구 이외의 학교로 배정받은 2020~2021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1. 3.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5호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며,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혁신+)학교 운영기간”을 ““혁신학교” 운영 기간”으로, “시”를 “평가를 통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혁신+학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된 혁신학교는”을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종합평가를 받아야”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한

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협력사업”을 “각 호의 협력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교육주체 간 민주적 소통 및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내 유·특·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 창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자율학교를 말한다.</p> <p>②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역할은 혁신학교기본계획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p> <p>2. “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며,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p>
<p>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① (생략)</p> <p>② 혁신(혁신+)학교 운영기간은 지정일 기준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시 3년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여 지원한다.</p> <p>⑤ (생략)</p>	<p>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혁신학교” 운영 기간----- ----- 평가를 통해 ----- “혁신+학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운영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③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4조(평가 및 재지정) ① 지정된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정된 혁신학교는 지정 후 3년차에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로부터 종합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p>	<p>제4조(평가 및 재지정) ① ----- -----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p> <p>②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하여야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재지정----- -----.</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위원회가 혁신학교의 자율학교 지정·</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위원회는 -----</p>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이 꺾어진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지원) ① ~ ③ (생략)

제17조(연수)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혁신정책 지원 관계자

② (생략)

제18조(협력사업)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 대해서 -----

-----.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
----- 누설해서는 안 -----.

제16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연수) ①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협력사업) -----
----- 각
호의 협력 사업-----.

1. 2. (현행과 같음)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1. 3.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89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3.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숲과 텃밭 가꾸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측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라북도의원
-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1. 4. 2.

전라북도 훈령 제1779호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근무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라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정의된 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상황실장"이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상황실 업무의 총괄 조정·지휘·감

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접수근무자"란 유·무선전화 및 다매체 등을 통하여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또는 "긴급신고공동대응시스템"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지령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관제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유관기관 공조·조정·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상황실 여건에 따라 접수근무자와 겸할 수 있다)

라. "운항관리담당자"란 상황실에 근무하며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 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고"라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하거나 통보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 소방서장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소방본부장은 전라북도지사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공동대응"이라 함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재난유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재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지역대를 포함)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① 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황실 업무를 총괄 조정·지휘·감독하는 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최소 소속 직원을 구성하되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① 상황실은 119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

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 포함)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119신고의 접수 및 관제·보고·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황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 "긴급신고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실은 내진·방수·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 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법」 제20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및 재난 상황의 보고,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

2.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3. 「119법」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신고의 접수·처리 및 소방정보·통신의 총괄

제8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가 상황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유관기관 공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

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19로 신고 접수 된 재난 상황이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소방력 출동 여부를 판단하여 출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난의 발생으로 유관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의 직원을 상황실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10조(운영) ① 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근무자 근무인력을 조정하거나 인사부서의 장에게 소방서의 인력을 요청하여 보강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팀에 배치한 접수대·관제대 및 구급상황관리대 등 각 운용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상황실은 119신고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관리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 라. 상황실 내 물품·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바. 119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관리
- 사. 다수사상자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조정 및 지도
- 자.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2. 상황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접수근무자

- 1) 화재 등 재난상황의 119신고접수 및 다매체신고접수
- 2) 119신고에 의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 3)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타 기관으로 이관
- 4) 재난 상황에 따른 필요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 5)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 6)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사항

나. 관제근무자

- 1)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 2)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 3) 재난상황의 상태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 4)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사항

다. 상황보고 근무자

-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 2)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 3)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 4)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5)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사항

라.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자

- 1)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 2)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 정보제공 및 안내
- 3)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4)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운영
- 5)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사항

마. 운항관리담당자

- 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업무
- 2)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3.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황관리시스템(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다. 유·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근무방법) ① 소방본부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 근무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황근무자의 교육, 휴가, 휴직 등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3.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근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4개조 또는 3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범위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자가 업무개시 전 출근하여 전(前)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상시근무를 하는 교대제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휴게시간)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휴게 장소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 재난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요 재난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 장소를 벗어날 경우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황실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제15조(비상소집)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및 지리조사)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국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 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통합망관리센터에 한정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 집합교육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⑤ 상황실장은 상황실 및 소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⑥ 상황실 근무자는 신속 정확한 119신고접수와 출동지령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지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18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 소방활동 일일 상황보고
- 2. 수시보고: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 3. 기타보고: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보고 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 소방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지체 없이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최초보고: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 2. 중간보고: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대상물 현황, 소방시설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 3. 최종보고: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않은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재난상황을 보고·전파하는 경우 전화, 문자, 팩스,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등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제20조(청장이 정하는 재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대응 2단계

- 이상이고, 사망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 2.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
- 3.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
-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재난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
- 6. 그 밖에 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제21조(지원 및 응원요청) ① 관할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토록 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중앙 및 인근 시·도 소방 인력·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시·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연락체계) 상황실장은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시·군 재난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비상전화(핫라인)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제24조(기록유지) ① 상황실 근무자는 119신고접수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3년간 저장 관리한다.
-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 장치에 1년간 저장 관리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공 및 공개) ①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절차를 준수 한다.

- ② 119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119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요구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내역 녹취파일 외에 당해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법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⑥ 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다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일지 및 대장)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관리하되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관제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될 경우 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119소방안전 활동상황"(별지 제2호서식)
5. 출입자통제부(별지 제4호서식) 및 그 밖에 상황실장이 별도 지정하는 일지

제27조(통신망 및 장비점검) ① 소방본부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지정운영

제28조(상황실 보안관리)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임무 및 기본교육)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
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제31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32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실 인력산정) 소방본부장은 "소방력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상황실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2.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 5~7개 소방서 1대 배치)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3.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분석, 유관기관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조회, 재난영상관리, 유·무선 통신관리, 상황분석, 정보통신, 항공운항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34조(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① 소방본부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사람으로 선발토록 한다.

제35조(수당 등) 소방본부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정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권라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일일 상황보고(제18조 관련)

소 방 활 동 일 일 상 황 보 고

0000. 00. 00 (0요일, 음 0. 0) 00:00 현재



119종합상황실

❖ 기상 상황

※ 기온(최저 / 최고 ℃):

■ 기상특보

▷

※

■ 날씨

▷

※

○

▷

■ 중기예보(00-00):

일차(요일)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씨								
00기온 (최저/최고,℃)	/	/	/	/	/	/	/	/

❖ 소방활동현황

구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건수	사망	부상	피해액 (백만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일계										
누계										

◆ 행정가중동
 ◆ 구급상황관리
 ◆ 생활안전조치
 ◆ 수난사고

○ 주요재난 기록



.

○



.

❖ 소방력 가용 현황

현원	소방업무팀			소방차량			합계			
	출동대기		휴무대기	계	출동대기	정비	계	출동대기	휴무대기	정비(사고)
	주간							주간		
야간							야간			

■ 전라북도 119통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0000. 00. 00.[월] 06:00
119통합상황실

총 괄

[전일 24:00 기준]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건 수	사 망	부 상	피해액 (백만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일 계										
누 계	'18									
계	'19									

◆ 랜 기 출 동
 ◆ 구 급상 황관 리
 ◆ 생 활안 전조 치

화재진압

-
- ▶
-
- ▶

구조·구급·생활안전

-
- ▶
-
- ▶

■ 전라북도 119통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상 황 근 무 일 지

소방상황 근무 내용(0000. 00. 00) - 0팀 주간/야간

근무 교대	08:00	○ 근무시간 : 00. 00.(0) 00:00 ~ 00. 00.(0) 00:00 ○ 근무인원: 0명()
----------	-------	---

연번	사고 종별	접수 시간	상황전파		내 용 및 조 치 사 항
			시간	대상	

■ 전라북도 119통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명부

구 분 월 일	출 입 자						안 내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용 무	출입시간	성 명	서 명

전라북도 고시 제2021-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순창 대방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의 도로구역(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897	송광~북홍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일원	13,217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5-1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1-1		0.5
변경	지방도	897	송광~북홍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일원	14,793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5-1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1-1		0.5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순창 대방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8)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가.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897호선	노선명	송광~북홍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7-1 ~ 순창군 북홍면 대방리 산141-2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 순창 대방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도로구역 반영				

나. 접도구역 지적 조서 : 붙임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55	10	보조 간선 도로	6,233	순창군북 홍면 대방리 산141-1	순창군북 홍면 농암리 544-1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2011-107호 (2011.04.15.)	
변경	소로	1	455	10	보조 간선 도로	6,213	순창군북 홍면 대방리 산141-1	순창군북 홍면 농암리 544-1	일반 도로		-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455	소로 1-455	도로연장 : 6,233m → 6,213m (감20m)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70,807	13,217	14,793	증)1,576		
1	순창	북홍	대방	산145-1	도	16,443	7,252	7,252	-		순창군
2	순창	북홍	대방	산155-8	도	125	125	125	-		순창군
3	순창	북홍	대방	산147-6	임	104	104	104	-	전남 담양군 구암면 강정리	강운집외3인
4	순창	북홍	대방	산147-1	임	69,417		50	증)50	광주시 북구 우산동 2-1 은하아파트 비-304	강지원외3인
5	순창	북홍	대방	산146	임	3,737		13	증)13	광주시 북구 운암동 1033 금호아파트 4-104	김동일
6	순창	북홍	대방	산147-4	임	5,562		41	증)4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3길 3	강종원
7	순창	북홍	대방	산145	임	18,110		878	증)878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0-2 석조빌라 201호	현홍광
8	순창	북홍	대방	산145-3	도	3,311	3,311	3,311	-		순창군
9	순창	북홍	대방	산263	도	1,686	66	98	증)32		국(농림수산 부)
10	순창	북홍	대방	산145-2	임	48,198		68	증)68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501	박봉석외2인
11	순창	북홍	대방	산143-1	도	1,863	1,863	1,863	-		순창군
12	순창	북홍	대방	산143-2	임	1,557		465	증)465	정산리 319-12	김옥희
13	순창	북홍	대방	산141-2	임	198		29	증)29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박공삼
14	순창	북홍	대방	산141-1	도	496	496	496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박공삼

2. 접도구역 지적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접도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48,465	3,915	3,826	감89		
1	순창	북홍	대방	산147-1	임	69,417	287	285	감)2	광주시 북구 우산동 2-1 은하아파트 비-304	강지원외3인
2	순창	북홍	대방	산147-4	임	5,562	387	370	감17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3길 3	강종원
3	순창	북홍	대방	산146	임	3,737	202	211	증)9	광주시 북구 운암동 1033 금호아파트 4-104	김동일
4	순창	북홍	대방	산145	임	18,110	1,155	1,135	감)2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0-2 석조빌라 201호	현홍광
5	순창	북홍	대방	산145-2	임	48,198	1,345	1,375	증30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501	박봉석외2인
6	순창	북홍	대방	산263	도	1,686	42	31	감)11		국 (농림수산부)
7	순창	북홍	대방	산143-2	임	1,557	404	340	감)64	정산리 319-12	김옥희
8	순창	북홍	대방	산141-2	임	198	93	79	감14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박공삼

전라북도 고시 제202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안 원좌산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의 도로구역(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국지도	49	해남~원주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일원	1,88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75-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68-1	-	0.19
변경	국지도	49	해남~원주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일원	2,465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75-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68-1	-	0.19
기정	지방도	721	남원~상관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일원	1,094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61-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산222-1	-	0.05
변경	지방도	721	남원~상관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일원	1,594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61-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산222-1	-	0.05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안 원좌산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고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8)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49호선	노선명	해남~원주,
	지방도		721호선		남원~상관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49호선 - 지정구간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75-2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68-1 (L=0.19km)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721호선 - 지정구간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61-2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산222-1 (L=0.05km)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 진안 원좌산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된 도로구역 반영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주간선 도로	13,822	교통광장6 진안읍 연장리 1248-1	진안군경계 성수면 좌산리 1216-25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2010-116호 (2010.05.07.)	국지도 49호선
변경	중로	3	2	12	주간선 도로	13,820	교통광장6 진안읍 연장리 1248-1	진안군경계 성수면 좌산리 1216-2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3	10	보조 간선 도로	789	성수면 좌산리 1175-4	진안군 경계 성수면 좌산리1258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2010-116호 (2010.05.07.)	지방도 721호선
변경	소로	1	13	10	보조 간선 도로	789	성수면 좌산리 1175-4	진안군 경계 성수면 좌산리1258	일반 도로	-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2호선	중로 3-2호선	연장 : 13,822m → 13,820m (감2m)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소로 1-13호선	소로 1-13호선	접속부 선형변경	

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1. 국지도 49호선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계						13,536	1,882	2,465	증)583		
1	진안	성수	좌산	967-1	도	238	6	6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53	이동기
2	진안	성수	좌산	968-1	도	169	95	95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063	이동기
3	진안	성수	좌산	968-3	도	183	6	6	-		전라북도
4	진안	성수	좌산	1158-1	전	1,288	-	335	증)33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14-52	마영국
5	진안	성수	좌산	1158-4	도	160	160	160	-		전라북도
6	진안	성수	좌산	1173-2	도	367	41	41	-	임실군 성수면 수철리	최찬수
7	진안	성수	좌산	1173-6	도	391	15	15	-		진안군
8	진안	성수	좌산	1175-2	도	618	360	360	-	전주군 전주면 청수정	김정호
9	진안	성수	좌산	1175-4	도	42	42	42	-		진안군
10	진안	성수	좌산	1175-5	도	103	53	53	-		전라북도
11	진안	성수	좌산	산220-1	임	3,736	-	81	증)8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14-52	마영국
12	진안	성수	좌산	산220-3	임	267	-	159	증)159		전라북도
13	진안	성수	좌산	산220-5	도	1,532	860	860	-		전라북도
14	진안	성수	좌산	산221-1	임	3,874	-	8	증)8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81-26	이귀남
15	진안	성수	좌산	산221-3	도	553	229	229	-		전라북도
16	진안	성수	좌산	산222-4	도	15	15	15	-		전라북도

2. 지방도 721호선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계						13,197	1,094	1,594	증)500		
1	진안	성수	좌산	1160-2	전	1,178	-	47	증)47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92	전점이
2	진안	성수	좌산	1160-7	도	30	30	30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92	전점이
3	진안	성수	좌산	1160-11	전	52	-	52	증)52		진안군
4	진안	성수	좌산	1161	전	52	-	9	증)9		진안군
5	진안	성수	좌산	1161-1	도	114	42	42	-		진안군
6	진안	성수	좌산	1161-2	전	173	-	56	증)56		진안군
7	진안	성수	좌산	1258	도	6,549	956	956	-		국토해양부
8	진안	성수	좌산	산221-1	임	3,874	-	34	증)34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81-26	이귀남
9	진안	성수	좌산	산222-1	임	1,109	-	302	증)302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92	김평기
10	진안	성수	좌산	산222-3	도	66	66	66	-		진안군

전라북도 고시 제202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안 중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의 도로구역(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725	정찬금산	진안군 정천면 일원	20,591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3-9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4-2	-	0.54
변경	지방도	725	정찬금산	진안군 갈용리 일원	11,479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3-9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4-2	-	0.54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안 중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고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063-290-6738)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25	노선명	정천~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3-9 ~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4-2 (L=0.54km)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 진안 중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도로구역 반영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보조간 선 도로	12,930	정천면 봉학리 76-1	주천면 주양리 340-2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2010-116호 (2010.05.07)	
변경	소로	2	2	8~9	보조 간선 도로	12,929	정천면 봉학리 76-1	주천면 주양리 340-2	일반 도로	-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	소로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 12,930m → 12,929m (감 1m) 폭원 : 8m → 8' 9m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333,186	20,591	11,479	감)9,112		
1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3-9	도	1,383	661	580	감)81		진안군
2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55	임	2,211	0	1	증)1		진안군
3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56	전	436	0	47	증)47		진안군
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65-4	임	137	0	18	증)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00-1 삼호아파트 1동 205호	상덕여사이순님 증종
5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65-3	임	1,863	0	174	증)17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294-3	김정임
6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65-1	도	4,069	4,069	2,254	감)1,815		전라북도
7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59	임	134	0	45	증)45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289	이상범외1인
8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57	전	6,186	0	93	증)93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289	이상범외1인
9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9-3	도	920	920	724	감)196		진안군
10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40	도	992	992	452	감)540		국토해양부
11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3-1	도	259	259	259			전라북도
12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208	도	397	397	324	감)73		국토해양부
13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4-3	도	1,431	1,431	88	감)1,343		전라북도
14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099-1	도	33	33	0	감)33	두산리	김수양
15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099-3	도	20	20	0	감)20	모정리 913	김종태 외 3인
16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1-1	답	1,698	1,698	1,352	감)346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76	김해김씨경파여 의곡종중
17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1-4	도	1,037	1,037	46	감)991		전라북도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18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0-1	도	36	36	0	감)36		전라북도
19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0-2	도	218	218	0	감)218		진안군
20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0-3	도	99	99	0	감)99		진안군
21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1-2	도	13	13	0	감)13	두산리	김수양
22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4-2	도	4,158	2,153	1,184	감)969		전라북도
23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207	천	33	33	33			건설교통부
24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4	도	136	136	130	감)6		전라북도
25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664-15	천	76,562	309	76	감)233		건설부
26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3	답	1,852	1,493	30	감)1463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58, 101동 2604호	김영수 외 1인
27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3-1	도	165	165	163	감)2		전라북도
28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101-3	도	68	68	68			전라북도
29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723	도	3,035	1,798	344	감)1,454		국토해양부
30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03	임	15,509	0	1,729	증)1,729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482-8	최충호
31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79-1	임	203,987	0	1,265	증)1,265		진안군
32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211	도	1,633	443	0	감)443		국토해양부
33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44	도	105	105	0	감)105		전라북도
3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45	도	94	94	0	감)94		전라북도
35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77	답	2,277	1,911	0	감)1911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길 126	이홍임

전라북도 고시 제2021-90호

부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농공단지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21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 : 부안군(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 균형발전

라. 추진경위

- 1995.11. 8. :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 1996. 8. 6. : 농공단지 지정 고시
- 1997.10. 9.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99. 2.23.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및 준공인가
- 1999.11.14. :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가격 승인
- 2003. 1.30.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3-24호)
- 2011. 3.23.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1-83호)
- 2020. 9.17.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727호)
- 2021. 4. 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90호)

마. 분양현황

(단위 : m²)

구 분	총 면적	분양계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계	149,203.5	123,053.3	123,053.3	0	1995.11. ~ 1999. 2.
산업시설구역	123,053.3	123,053.3	123,053.3	0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25,609.4				
녹지구역	540.8				

바. 입주현황

(단위 : 개소, m²)

구 분	입 주 업 체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21. 2월현재	32	32	-	123,053.3	123,053.3	-
향후계획	-	-	-	-	-	-
합 계	32	32	-	123,053.3	123,053.3	-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입 지 여 건	확 충 계 획	
항 만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15선좌 - 하역능력 : 331만톤/년	○ 군산신항건설 - 접안능력 : 2~5만톤 62선좌 - 하역능력 : 22백만톤/년	
교 통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에서 6km ○ 호남고속도로 태인IC에서 28km ○ 군산공항 이용(군산↔제주)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 군산~전주간 고속도로	○ 부안~고창 국도23호 4차로확충	
용 수	○ 용수원 : 부안댐광역상수도 사용 ○ 1일 소요량 : 65톤	-	
전 력	○ 전력소요 : 약 159,884KW	-	
통 신	○ 회선수 : 약 31,873회선	-	
환 경	폐수처리 시설	○ 부안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일일 처리용량 5,100톤)	-
	공동이용 시설	○ 부안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동이용	-
	기 타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입주 및 사후관리

(1)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단, 공장주가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2)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제조업종
-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도축업종 및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업종, 부산물이용 사료·비료제조업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과 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지역환경에 상당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공장주가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부동산임대업(L6811)

-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3) 입주 우선순위

- 농·수·축산물 등 현존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는 업체
- 첨단산업 분야의 업종
- 기존입주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체
- 공해가 적고 유희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4)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3조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 하여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1) 업종별 배치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제조업종

(2) 업종별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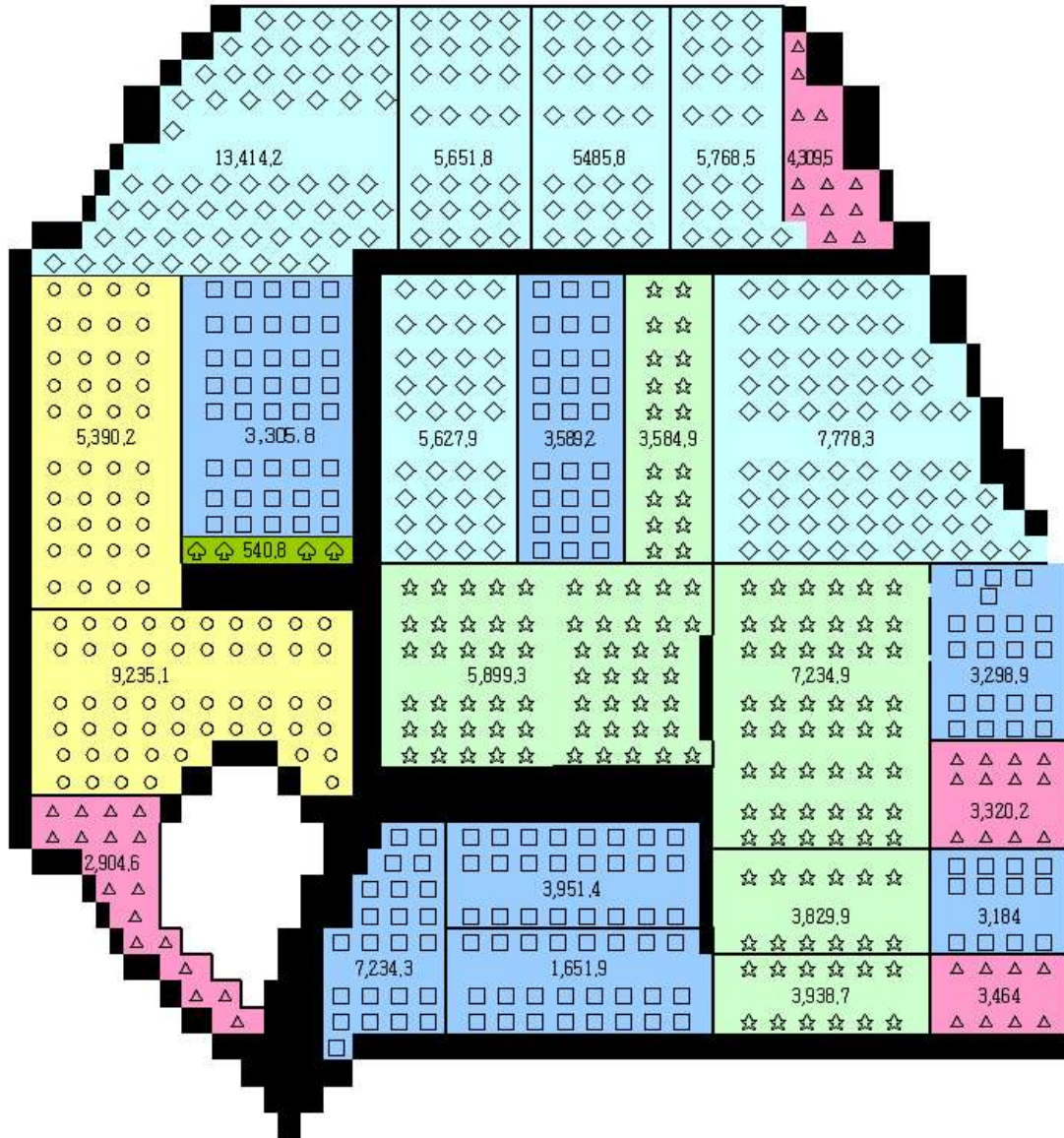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부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나항 업종에 한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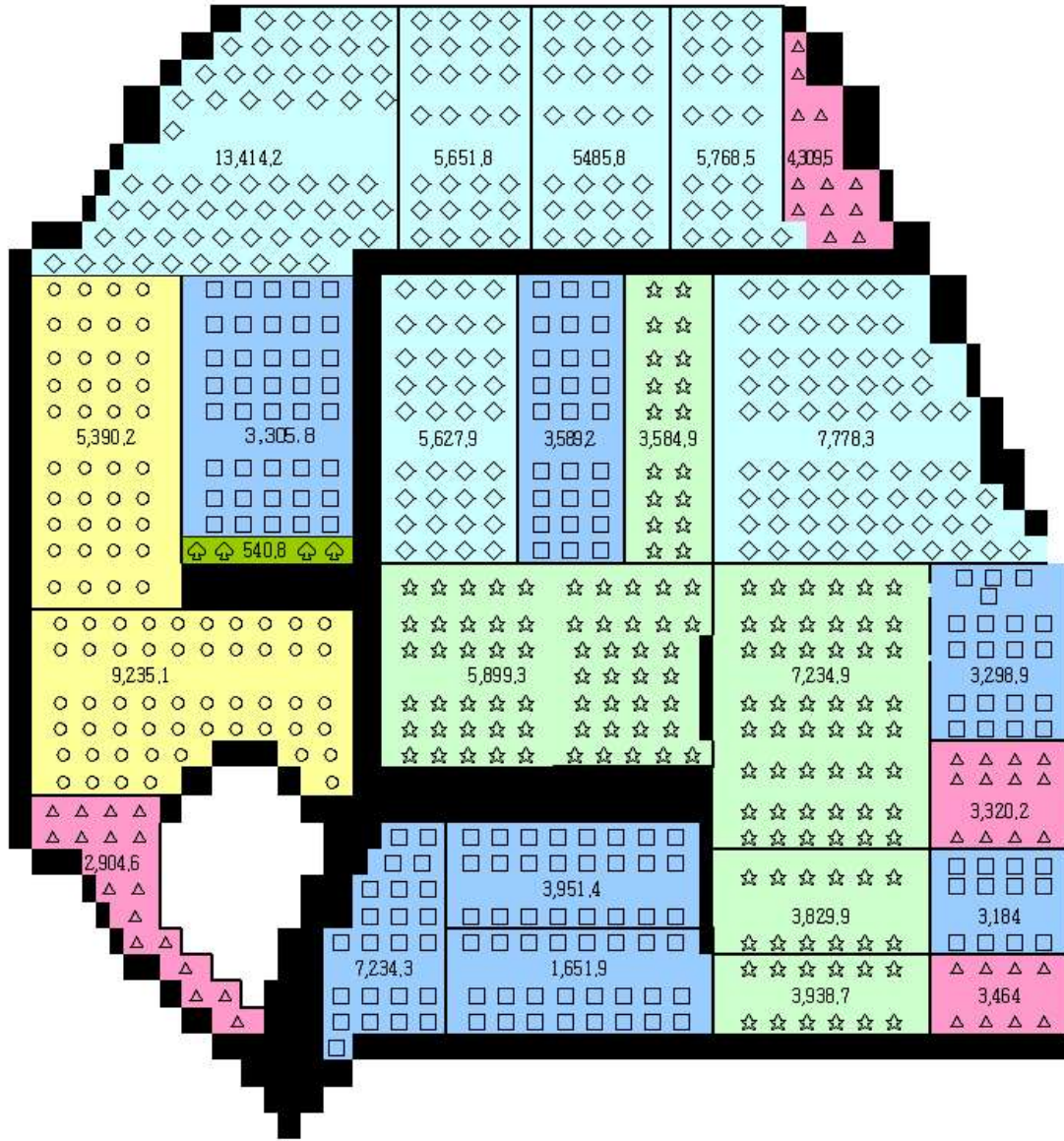
-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써 특정 업종의 신청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 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전력 및 용수의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1] ○ 부안농공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



범례	용도	면적(m ²)
⊞	산업시설구역	123,053.3
△	녹지지역	540.8

○ 부안농공단지 업종별 배치 계획도



범례	용도	면적(m ²)
☆	음료식품제조업	24,488
◇	철강제조업	43,72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4,625
□	고무 및 플라스틱	26,215
△	기타(금속기계, 섬유 등)	13,998
♣	녹지	540.8

전라북도 고시 제2021-91호

부안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농공단지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나. 관리기관 : 부안군(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다.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 균형발전
- 라. 추진경위
 - 2007. 6.20. :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 2008. 3.19. : 농공단지 지정 고시(부안군 고시 2008-13호)
 - 2009.12.29.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0.11. 9. : 농공단지 지정 변경 고시(부안군 고시 2010-52호)
 - 2010.11.26.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2010-307호)
 - 2013. 2.14.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안군 고시 2013-12호)
 - 2013. 2.18.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
(부안군 공고 제2013-135호)
 - 2018. 9.28. :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부안군 고시 2018-95호)
 - 2018.12.26.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안군 고시 2018-127호)
 - 2020. 9.17.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2020-273호)
 - 2021. 4. 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91호)

마. 분양현황

(단위 : m²)

구 분	총 면적	분양계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계	343,809	250,830.3	247,973.3	2,857	2007. 6. ~ 2013. 2.
산업시설구역	250,830.3	250,830.3	247,973.3	2,857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58,495.0				
녹지구역	34,483.7				

바. 입주현황

(단위 : 개소, m²)

구 분	입 주 업 체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21. 2월현재	11	11	-	247,973.3	247,973.3	-
향후계획	-	-	-	-	-	-
합 계	11	11	-	247,973.3	247,973.3	-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입 지 여 건	확 충 계 획	
항 만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15선좌 - 하역능력 : 331만톤/년	○ 군산신항건설 - 접안능력 : 2~5만톤 62선좌 - 하역능력 : 22백만톤/년	
교 통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에서 6km ○ 호남고속도로 태인IC에서 28km ○ 군산공항 이용(군산↔제주)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 군산~전주간 고속도로	○ 부안~고창 국도23호 4차로확충	
용 수	○ 용수원 : 부안댐광역상수도 사용 ○ 1일 소요량 : 65톤	-	
전 력	○ 전력소요 : 약 159,884KW	-	
통 신	○ 회선수 : 약 31,873회선	-	
환 경	폐수처리 시설	○ 부안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일일 처리용량 5,100톤)	-
	공동이용 시설	○ 부안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동이용	-
	기 타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입주 및 사후관리

(1)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당초 제조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	------------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도축업종 및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업종, 부산물이용 사료·비료제조업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과 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지역환경에 상당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목 2)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공장주가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부동산임대업(L6811)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3) 입주 우선순위

- 농·수·축산물 등 현존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는 업체
- 현지인을 50%이상 고용하는 업체
-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4)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3조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1) 업종별 배치현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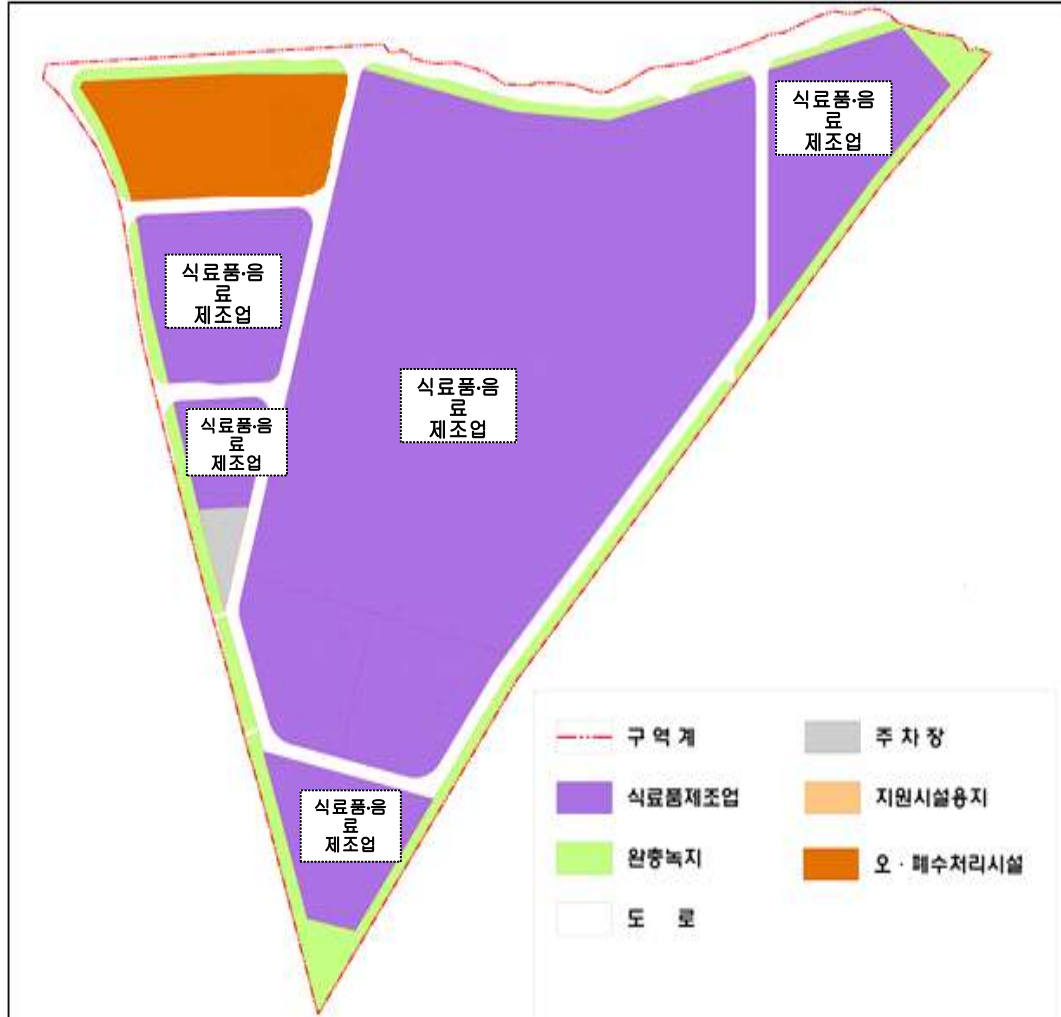
업종별	품목분류 (중분류)	업체수 (개)	면적	비고
계		11	247,973.3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C10, C11	11	247,973.3	

(2) 업종별 배치기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입주업체간의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전라북도 고시 제2021-92호

부안3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3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농공단지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번지 일원
- 나. 관리기관 : 부안군(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다. 조성목적 : 지역전략 산업의 육성과 인근 농공단지와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경제기반 구축과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계획적인 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라. 추진경위
- 2011. 4. 8. : 농공단지 선정 확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2014. 3.26. : 농공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안군 고시 제2014-18호)
 - 2014.10.17. :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 8.17.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6. 3.10. :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부안군 고시 제2016-15호)
 - 2016.11.10.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안군 고시 제2016-94호)
 - 2019. 2.2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9-31호)
 - 2020.12.29.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안군 고시 제2020-181호)
 - 2021. 4. 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92호)

마. 분양현황

(단위 : m²)

구 분	총 면적	분양계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계	329,000	234,295	11,364.2	0	2011. 4. ~ 2020.12.
산업시설구역	234,295	234,295	11,364.2	222,930.8	
지원시설구역	4,172				
공공시설구역	64,195				
녹지구역	26,338				

바. 입주현황

(단위 : 개소, m²)

구 분	입 주 업 체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21. 2월현재	4	4	-	11,364.2	11,364.2	-
향후계획	-	-	-	-	-	-
합 계	4	4	-	11,364.2	11,364.2	-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입 지 여 건	확 충 계 획	
항 만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15선좌 - 하역능력 : 331만톤/년	○ 군산신항건설 - 접안능력 : 2~5만톤 62선좌 - 하역능력 : 22백만톤/년	
교 통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에서 6km ○ 호남고속도로 태인IC에서 28km ○ 군산공항 이용(군산↔제주)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 군산~전주간 고속도로	○ 부안~고창 국도23호 4차로확충	
용 수	○ 용수원 : 부안댐광역상수도 사용 ○ 1일 소요량 : 65톤	-	
진 력	○ 전력소요 : 약 159,884KW	-	
통 신	○ 회선수 : 약 31,873회선	-	
환 경	폐수처리 시설	○ 부안3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일일 처리용량 450톤)	-
	공동이용 시설	○ 부안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동이용	-
	기 타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입주 및 사후관리

(1)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2)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당초 제조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4 제1차 금속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도축업종 및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업종, 부산물이용 사료·비료제조업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과 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지역환경에 상당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부동산임대업(L6811)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3) 입주 우선순위

-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의 업종, 신기술 보유업종 등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

- 부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거나, 대규모로 투자하는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관련 업체
- 농·수·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는 업체
-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4)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3조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1) 업종별 배치현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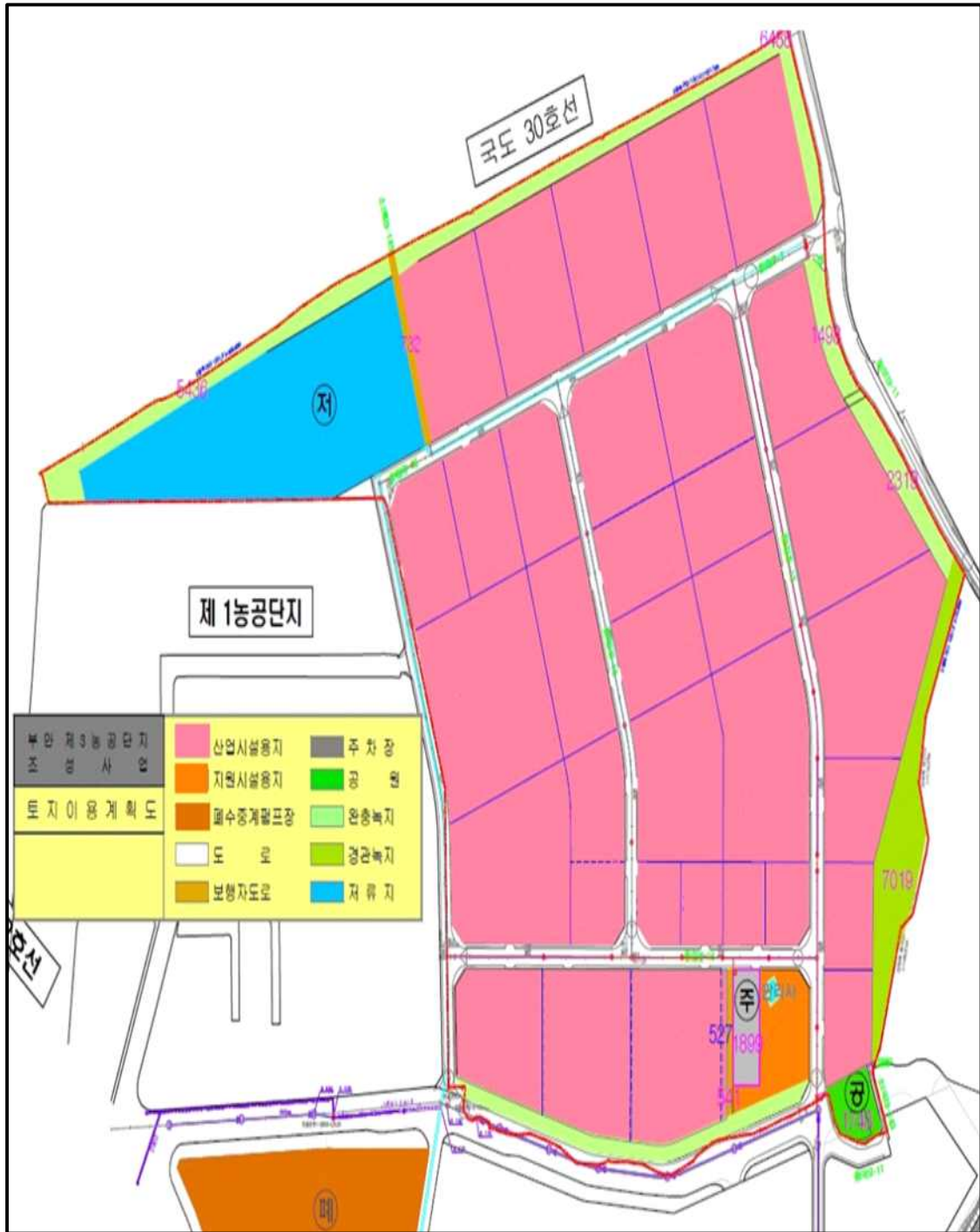
업종별		품목분류 (중분류)	업체수 (개)	면적	비고
계			34	234,295	
주업종	화학물질, 고무및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C20,C22,C23, C24,C25,C26, C28,C29,	21	122,276	

부업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C10, C11	8	66,821	
기타업종	고무및플라스틱, 제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 기타제품	C22,C24,C25, C26,C28,C31, C33	5	45,198	

(2) 업종별 배치기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다만,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주업체간의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별첨 : 1. 용도별 배치계획



별첨 : 2. 업종별 배치계획



주업종	C20 화학물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C23 비금속 광물, C24 제1차 금속, C25 금속가공, C26 전자부품, C28 전기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부업종	C10 식료품, C11 음료,
기타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C24 제1차 금속, C25 금속가공, C26 전자부품, C28 전기 장비, C31 기타 운송장비, C33 기타 제품,

전라북도 고시 제2021-93호

줄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줄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농공단지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741번지 및
보안면 영전리 288번지 일원
- 나. 관리기관 : 부안군(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다.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 균형발전
- 라. 추진경위
- 1988. 3. :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 1989. 1.14. : 농공단지 지정 고시
 - 1989.12.20.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90. 8.20.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및 준공인가
 - 1991. 1.14. :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가격 승인
 - 1999. 3.1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1999-66호)
 - 2020. 9.17.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274호)
 - 2021. 4. 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93호)

마. 분양현황

(단위 : m²)

구 분	총 면적	분양계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계	89,420	68,884	68,884	0	1988. 3. ~ 1990. 8.
산업시설구역	68,884	68,884	68,884	0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20,536				
녹지구역					

바. 입주현황

(단위 : 개소, m²)

구 분	입 주 업 체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21. 2월현재	14	14	-	68,884	68,884	-
향후계획	-	-	-	-	-	-
합 계	14	14	-	68,884	68,884	-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입 지 여 건	확 충 계 획	
항 만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15선좌 - 하역능력 : 331만톤/년	○ 군산신항건설 - 접안능력 : 2~5만톤 62선좌 - 하역능력 : 22백만톤/년	
교 통	○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에서 4km ○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18km ○ 군산공항 이용(군산↔제주)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 군산~전주간 고속도로	○ 부안~고창 국도23호 4차로확충	
용 수	○ 용수원 : 부안댐광역상수도 사용 ○ 1일 소요량 : 65톤	-	
전 력	○ 전력소요 : 약 159,884KW	-	
통 신	○ 회선수 : 약 31,873회선	-	
환 경	폐수처리 시설	○ 해당 공장에 1차 처리 후 줄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	-
	공동이용 시설		-
	기 타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입주 및 사후관리

(1)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및 제42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공장주가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2)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제조업종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도축업종 및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업종, 부산물이용 사료·비료제조업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과 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 활동 및 지역환경에 상당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공장주가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부동산임대업(L6811)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3) 입주 우선순위

- 현존 부존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업체
-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산업 업종
-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체
- 공해가 적고 유희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4)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3조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1) 업종별 배치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제조업종

(2) 업종별 배치기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출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나항 업종에 한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써 특정 업종의 신청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전력 및 용수의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라북도 고시 제2021-94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정읍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공공 청사	정읍 교육 지원청	정읍시 수성동 450-2번지 일원	-	증)12,738.0	12,738.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참고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제58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제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및 2항에 의거 건축물이 추가되는 시설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함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신설) - 면적 : 12,7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읍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도 : “실음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1-95호

정읍 도시관리계획(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정읍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정읍 인터체인지	100,085	감) 7,587	92,498	전북고 제2003-160호 (03.07.04)	-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교통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축소변경 ◦ 면적 : 100,085m² → 92,498m² 감) 7,58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월동자재보관창고 이전 및 노후화된 정읍경찰서 신축이전에 따른 교통광장 축소변경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공공 청사	정읍 경찰서	정읍시 농소동 226-80번지 일원	-	증) 15,984	15,984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농소동 228-60번지 일원 ◦ 면적 : 15,98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경찰서 건축물의 노후화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읍경찰서를 신축·이전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1 - 97호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사업명 :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유천리, 진서면 진서리 일원
3. 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146.7ha
5. 사업개요
 - 가. 수원공 : 배수문 2개소, 게이트펌프 1개소
 - 배수문 : 신활배수문(B×H×런=2.0m×1.0m×1런), 호암배수문(B×H×런=3.0m×3.0m×4런)
 - 게이트 펌프 : 신활게이트펌프(B×H×런=2.0m×2.0m×2런, Q=0.7m³/s)
 - 나. 평야부 : 배수로 정비 6조 5,055m
 - 다. 복토 : 5.38ha, 복토량 9,754m³
6. 사업기간 : 2018.07.25. ~ 2022.12.20
7. 총사업비 : 10,903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063-580-1054)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토지)

사업명 :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물건) 권리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676-13 (676-5)	답	2,950.0	47	구한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3				
2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산75-191 (산75-156)	구	8,170.0	96.0	농업회사법인아 리올팜 유한회사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34	부안중앙농 업협동조합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989	지상권, 근저당권	
								김정열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62, 405동 306호	근저당권	
3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91-27 (491-21)	임	21,420.0	3,635.0	김영섭	부안군 하서면 등용길 17-14	남부안농업 협동조합	부안군 보안읍 영전길 136	근저당권, 지상권	
4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52-5 (452-1)	답	1,411.0	102.0	이재덕	부안군 진서면 250				
						이재만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34				
5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79-231 (산79-215)	임	257.0	257.0	김재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55, 104/3602				
						김재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A동 1907 (자양동,더샵스타시티)				
6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07-5 (807-1)	잡	3,960.0	47.0	조성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6 경남아파트 3-1203				
7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09-1 (809)	답	1,481.0	70	박문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60-1 한강아파트 103/804				
						박종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480				
8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37-2 (837-1)	답	1,431.0	65	송준섭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74-1				
9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53-1 (853)	답	410.0	30.0	박남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4				
10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54-1 (854)	답	1,983.0	78.0	박남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4				
11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55-1 (855)	답	1,983.0	76.0	최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산로7길 6-19 제A동 제지하층 제1호(중산동)				
12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58-1 (858)	답	1,937.0	73.0	어국담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70, 411동1303호 (민락동, 산들마을아파트)	양순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4-133	가등기	
13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59-1 (859)	답	1,977.0	73.0	최종채	부안군 보안면 유천호암로 172-4				
14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61-1 (861)	답	1,983.0	68.0	최종채	부안군 보안면 유천호암로 172-4				
15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62-1 (861)	답	797.0	46.0	최종채	부안군 보안면 유천호암로 172-4				
16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80-1 (880)	답	8,200.0	50.0	구한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3				
17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83-1 (883)	답	1,977.0	15.0	구한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3				
18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83-2 (883)	답	1,977.0	88.0	구한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물건) 권리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907-1 (907)	답	1,081.0	88.0	신갑동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13				
						신태평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87				
						신엽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286				
						신현두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396				
20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908-1 (908)	답	1,808.0	90.0	최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6-19 제A동 제지하층 제1호(증산동)				
21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45-1 (845)	답	1,967.0	71.0	임채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74				
22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46-1 (846)	답	1,997.0	71.0	임채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74				
23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06-2 (806-2)	구	20,512.0	20,512.0	어윤택	부안군 보이면 유천리 650				
						박남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4				
						송달용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313				
						김동환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79				
						이장풍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99				
						홍중윤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49				
						서정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48				
						박병근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4				
						서정화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80				
						송영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47				
						최상근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55				
						정용대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49				
						홍종권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59				
						김복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626				
						박인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483				
						김태석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423				
						김용철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585				
배희택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362										
최화섭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11										
홍종욱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93										
윤길동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토지,물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물건) 권리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물건)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806-2 (806-2)	구	20,512.0	20,512.0	서동이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8				
						신 회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7				
						김구룡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63				
						신경인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4				
						강선수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9				
						차미봉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11				
						신백인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86				
						홍도화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1				
						홍종원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92				
						윤복성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84				
						최만익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80				
						최만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80				
						김용욱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13				
						홍순규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3				
						배창동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396				
						김향렬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63				
박용운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83										
김정식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6										
신경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04										
신석문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718										
24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산75-48 (산75-48)	임	1,280.0	1,280.0	서범섭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0(창평동)				일시 사용
						서유찬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0(창평동)				
25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79-215	임	20,220.0	1,850.0	김제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55, 104/3602				일시 사용
						김제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A동 1907(자양동,더샵스타시티)				
26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91-23	임	27,297.0	2,860.0	김영섭	부안군 하서면 등용길 17-14	남부안농업 협동조합	부안군 보안읍 영전길 136	근저당권, 지상권	일시 사용
27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79-216	양	6,461.0	양어장	김제철	부안군 보안면 유천호암로 188-33			임대인	지장물

전라북도 고시 제2021-98호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도시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개념

“온압 보정계수”란 도시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계수로서 가스를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적용지역별 온압보정계수

온압보정계수	적용지역	비고
0.9933	진주시(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0.9970	군산시(부안군, 고창군)	
0.9948	김제시	
0.9958	익산시	
0.9936	정읍시	
0.9887	남원시(순창군)	

3. 적용범위

-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가. 도시가스 사용량(m³)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고시 제2020-40호(2020.2.13.)
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19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과담당 위촉교사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교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자 교사 위촉 삭제 (안 제6조)
-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자원봉사자를 교사로”→“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변경
- 나. 위촉교사 시간당 단가 인상 (안 제7조제2항)
- 교사에게는 1시간당“28,000원 → 36,000원”으로 수당 인상
- 다. 학교행사참여자의 경비 인상 (안 제7조제2항)
- 교사가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만원 이하 → 4만원 이하”로 경비 인상
-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1-817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전화 : 063-290-6896, 팩스 063-254-391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학관리실 담당자 이동규
(전화 : 063-290-689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칙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은 (이하 “교장”이라 한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를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등교사자격증”을 “법 제21조제2항에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만62세”를 “만 62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자를 교사로 위촉하여 활용”을 “법 제21조제2항에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8,000원”을 “36,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교사로 위촉되어”를 “위촉된 교사가”로, “28,000원”을 “36,000원”으로, “2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제9조 중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용하되”를 “위촉하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u>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u>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u>」의 ----- -----.</p>
<p>제3조(교장의 책무) <u>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u>(이하 “학교”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개정 2016. 1. 29]</p>	<p>제3조(교장의 책무) <u>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u>은 (이하 “교장”이라 한다) <u>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u>-----.</p>
<p>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 ①교장은 「<u>초·중등교육법</u>」 제21조제1항 관련 <u>별표 1</u>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p>	<p>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 ①----- 「<u>초·중등교육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u>별표 1</u>에 따른 -----.</p>
<p>②교사는 <u>중등교사자격증</u> 소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②--- 법 제21조제2항에 <u>별표 2</u>에 따른 <u>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u> -----.</p>
<p>③교장 및 교사의 근무 연령은 <u>만62세</u>까지로 한다.</p>	<p>③----- <u>만 62세</u>-----.</p>
<p>제6조(교사의 정원) ①교사의 정원은 “<u>별표 1</u>”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p>	<p>제6조(교사의 정원) ①----- <u>별표 1</u>-----.</p>
<p>②교장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u>자원봉사자를 교사로 위촉하여 활용</u>할 수 있다.</p>	<p>②----- ----- <u>법 제21조제2항에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u>---.</p>
<p>제7조(급여 및 수당 등) ①교장의 봉급 및 수당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 제32조를 따른다.</p>	<p>제7조(급여 및 수당 등) ①-----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 제32조-----.</p>
<p>②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시간당 <u>28,000원</u>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교사로 위촉되어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u>28,000원</u>이 아니라 학교행사 1건당 <u>2만원</u>의 범위에서 교장이 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u>36,000원</u>----- ----- ----- <u>위촉된 교사가</u> ----- ----- <u>36,000원</u>----- ----- <u>4만원</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운영비)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매년 전라북도 일반회계예산에 <u>계상</u>하여야 한다.</p> <p>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①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u>임용</u>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1조(수업료 등 징수) ①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u>별표 2</u>"의 학습비 징수기준에 따라 수납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운영비) ----- ----- <u>반영</u>-----.</p> <p>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①----- ----- <u>위촉</u>하되-----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업료 등 징수) ①----- ----- <u>별표 2</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일부개정) 2005-06-10 규칙 제 2634호
 (일부개정) 2008-03-07 규칙 제 2729호
 (일부개정) 2009-01-30 규칙 제 2761호
 (일부개정) 2010-07-23 규칙 제 2814호
 (일부개정) 2016-01-29 규칙 제 3000호
 (일부개정) 2018-04-20 규칙 제 3077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①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교장의 책무)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은(이하 “교장”이라 한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개정 2016. 1. 29]

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①교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1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 <개정 2002. 6. 28, 2005. 6. 10, 2016. 1. 29>

②교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2. 6. 28>

③교장 및 교사의 근무 연령은 만 62세까지로 한다. <신설 2002. 6. 28, 개정 2005. 6. 10, 2010. 7. 23>

제5조(교사의 임무)① <삭제 2005. 6. 10>

②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5. 6. 10>

제6조(교사의 정원)①교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②교장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2010. 7. 23, 2016. 1. 29>

제7조(급여 및 수당 등) <개정 2018. 4. 20>①교장의 봉급 및 수당은 「지방공

무원 보수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00. 2. 11 , 2005. 6. 10, 2016. 1. 29>

②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시간당 **36,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교사가**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36,000원**이 아니라 학교행사 1건당 **4만원**의 범위에서 교장이 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9. 1. 30, 2018. 4. 20>

제8조(사무직원)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003. 11. 14>

제9조(운영비)학교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매년 전라북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①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5. 6. 10, 2010. 7. 23>

② 교사 위촉 시에는 교사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기준 및 방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③도지사는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전이라도 해지·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16. 1. 29>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에 학교 이외의 업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7. 23, 2016. 1. 29>
2.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를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제11조(수업료 등 징수)①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별표 2**의 학습비 징수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②수업료 등의 공납금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수납한다. <개정 2005. 6. 10>

③학교에서는 제1항의 수업료 등 이외의 각종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교육상 필요한 교재비 및 수학여행비는 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업료 감면)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학년별 현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3. 11. 14, 2005. 6. 10, 2016. 1. 29>

제13조(표창)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14, 개정 2003. 11. 14>

제14조(학사관리 및 학교운영 등) 학교의 학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11, 개정 2003. 11. 14>

부 칙 <1997. 12. 5 규칙2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1 규칙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8 규칙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4 규칙2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0 규칙2634>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감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교감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3. 7 규칙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30 규칙276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3 규칙2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 계약된 교사는 제10조제1항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 29 규칙3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규칙30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별표서식

[별표 1] <신설 2000. 2. 11 규칙2414, 개정 2003. 11. 14, 2008. 3 7, 2010. 7. 23>

교원정수표(제6조 관련)

구분	과목군	교 과 목				정원	비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		
합 계						24	
교장						1	
교사 (강사)	인문 사회	국어		국어	독서, 문학	3	
		도덕		도덕	시민윤리	1	
		사회		사회 국사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법과사회 세계사	3	
	과학· 기술	수학		수학	실용수학 수학 I	3	
		과학		과학	생활과학 생물	2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사회와컴퓨터	1	
	예·체능	체육		체육	체육과건강 체육실기	2	
		음악		음악	음악과생활 음악실시	1	
		미술		미술	미술과생활 미술실기	1	
	외국어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회화	3	
					제2외국어	1	
	교양		한 문		한문 한문고전	1	
	기타		컴퓨터			1	

[별표 2] <신설 2000. 2. 11 규칙 제 2414, 개정 2003. 11. 14, 2009. 1. 30>

학 습 비 징 수 기 준 (제11조 관련)

구 분		징 수 금 액		비 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 업 료 등	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으로 면제	일반공립학교의 50%상당액	※ 당해연도 지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준함
	수업료		일반공립학교의 30%상당액	
학교운영 지원비		교육청 고시금액의 50%상당액	교육청 고시금액의 50%상당액	

전라북도 공고 제2021-619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
전라북도지사

- 1. 허가번호 : 전라북도 제2020-45호
- 2. 법인명 : 사단법인 익산가정상담센터
-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 4. 대표자 : 조 세 련(1956. 03. 10)
- 5. 주된사업
 -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6. 변경사항 : 정관 제44조(기부금공개) 조문 신설
- 7. 변경일자 : 2021. 3. 25.

사단법인 익산가정상담센터 정관 변경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장 보칙	제9장 보칙 제44조(기부금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업체명	업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유한회사 코리아베스트환경	대기	김정택	제189호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85, B동	등록('21.03.24.)
주식회사 씨이피	대기	김성두	제175호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벤처창업관 102호	반납('21.03.24.)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21-1-전라북도-31
2. 단체명칭 : 전북리더십연수원
3.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5번지, 4층 413호
4. 대표자 : 김기수
5. 주된 사업
 - 인문학, 생활 리더십 강의 제공
 - 리더십 관련 행사 개최 및 자료 발간
 - 생활 리더십 향상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
전라북도지사

- 1. 허가번호 : 제2001-29호
- 2. 법인명 :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 4. 대표자 : 정진해(1967. 12. 07.)
- 5. 주된사업
 - 청소년 연구 활동
 - 청소년 수련 활동
 -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 청소년 상담
 - 청소년 국제 교류
 - 청소년 자아 개발
 - 청소년 복지 증진
 - 청소년 자원 봉사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청소년 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민간자격증발행
 - 가정(성) 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및 상담소 운영
 - 학원 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원 설치 운영
 - 독서진흥 및 문고설치, 운영
 - 장애청소년복지증진사업 및 연구 활동
 - 청소년 지능과학탐구 및 교육원 운영
 -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교육활동
- 6. 변경사항 : 정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일부 개정
- 7. 변경일자 : 2021. 3. 26.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정관 변경내용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번지에 두며 국내외 지역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본 협회가 설치한 지역협회 (중략) 인천기독교청소년협회 인천광역시 <u>부평구 부평동 431-46</u></p> <p>충남 기독교청소년협회 충남 계룡시 <u>두마면 두계리 108-2</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번지에 두며 국내외 지역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본 협회가 설치한 지역협회 (중략) 인천기독교청소년협회 인천광역시 <u>미추홀구 소성로 181-24(학익동) 학익빌딩 5층</u></p> <p>충남 기독교청소년협회 충남 천안시 <u>서북구 오성3길 12-3 201호</u></p> <p><u>경기기독교청소년협회</u>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u>강남로 8(구갈동, 우성메디피아 301호)</u></p> <p><u>남원기독교청소년협회</u> 전라북도 남원시 <u>봉당길 13-7 1층</u></p> <p><u>영남기독교청소년협회</u> 울산광역시 남구 <u>신선로 184번길 49, 1F, 101호, 102호</u></p> <p><u>순천기독교청소년협회</u> 전남 순천시 <u>시민로 67</u></p>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 공 고 사 항

1. 등록번호 : 제2021-04호
 2. 모 집 자 : (사)리턴
 3. 모집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구조 보호관리 및 치료하여 입양을 보내기 위함
 4. 모집목표액 : 금900,000,000원(금구억원)
 5. 모집금품 : 현금 및 물품
 6. 모집기간 : 2021. 4. 1. ~ 2022. 3. 31.
 7. 사용기간 : 2021. 4. 1. ~ 2023. 3. 31.
 8. 모집지역 : 전국
 9. 모집방법 : 행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등
- * 사무실 소재지 :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

전라북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22호
- 2. 단체명칭 :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강 영 이
 - 생 년 월 일 : 1950. 09. 07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16
- 5. 주된 사업
 - 여성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교류증진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 란(1958.8.25)	강영이(1950.9.7)	

7. 허가(변경)일자 : 2021. 3. 30.

전라북도 공고 제2021-648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바울선교회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금암동)
3. 대 표 자 : 이동휘
4. 주된사업
 - 선교사의 선발과 훈련
 - 선교사 파송, 관리, 케어
 - 선교동원
 - 각종 선교에 관한 문서발간
 - 중보기도사역
 - 해외 선교에 관련된 제반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2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37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1. 3. 29.

전라북도 공고 제2021-650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전라북도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및 인정 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예고내용 :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①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별			보유자			
명칭	보유종별	관리단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문고산조	신패동류 거문고산조	남원시 (남원시장)	김무길	남	1943.06.10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69번지 운산원 소리터

② 보유자 인정

지정별			보유자			
명칭	보유종별	관리단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판소리	심청가	전주시 (전주시장)	송재영	남	1961.10.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술내로 120번지
판소리	신청가	전주시 (전주시장)	장문희	여	1976.12.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 2길 22

2.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3. 예고사유 : 조사지표 항목 평가결과 우수

①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 정 별		보 유 자		
명 칭	보유종별	성 명	성별	예 고 사 유
거문고산조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김무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지정 : 전승가치(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지표 항목 평가결과 우수 - 보유자 인정 1단계 : 전승능력(전승활동), 전승환경(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전승활동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지표 항목 평가결과 우수 - 보유자 인정 2단계 : 전승능력(전승기량, 전승역량), 전승환경(전승기반) 평가결과 우수

② 보유자 인정

지 정 별		보 유 자		
명 칭	보유종별	성 명	성별	예 고 사 유
판소리	심청가	송재영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자 인정 1단계 : 전승능력(전승활동), 전승환경(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전승활동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지표 항목 평가결과 우수 - 보유자 인정 2단계 : 전승능력(전승기량, 전승역량), 전승환경(전승기반) 평가결과 우수
판소리	신청가	장문희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자 인정 1단계 : 전승능력(전승활동), 전승환경(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전승활동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지표 항목 평가결과 우수 - 보유자 인정 2단계 : 전승능력(전승기량, 전승역량), 전승환경(전승기반) 평가결과 우수

4. 연락처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63-280-3318

○ 전송번호 : 063-280-2539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651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전라북도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인정 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예고내용 : 명예보유자 인정

○ 명예보유자 인정

종 목 명			보 유 자			
명 칭	기·예능	관리단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죽염제조장	죽염제조	부안군 (부안군수)	허재근	남	1928.03.01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439

2.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3. 예고사유

○ 명예보유자 인정

종 목 명			보 유 자			
명 칭	기·예능	성 명	성별	예 고 사 유		
죽염제조장	죽염제조	허재근	남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전환 신청		

4. 연락처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63-280-3318
- 전송번호 : 063-280-2539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6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1. 단체명칭 : 한국학원총연합회 익산시분회
2. 변경등록 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대표자	김경중	송형기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50, 2층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116 3층

3. 주된 사업

- 교육과 자립에 관한 사항
- 자체 정화 규정에 의한 감사
- 청소년 선도 사업
- 국가 유공자 자녀 및 극빈 학생에 대한 무상강습 실시 사항
-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타사업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3. 29.(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1 -40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후속조치 철저	<p>○ 군산 국가산단 등 4개 산단이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3.24)되어 우리 도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절차 이행, 국가예산확보, R&D지원 등이 적기추진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또한,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맞추어 농공단지, 일반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대개조 작업도 병행 수립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투자금융과 / 협조 : 지역정책과)</p>
2021 -41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철저	<p>○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최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완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친환경·미래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신속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연생태과, 신재생에너지과 / 협조 :)</p>
2021 -42	노후주택 개선 지원방안 마련	<p>○ 도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26.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별로 대상, 규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유치하고,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주택건축과 / 협조 :)</p>
2021 -43	휴양힐링산업을 통한 축소도시 극복 방안 검토	<p>○ 국토연구원은 최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을 인구감소와 경제쇠퇴가 발생하는 축소도시로 분류함.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가능한 생태·체험·치유 등 휴양자원을 조사하여 시군별 분야별 공모사업 등 휴양힐링산업 활성화를 통한 축소도시 극복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관광총괄과 / 협조 : 농촌활력과, 자연생태과, 산림복지과, 수산정책과)</p>
	당면·현안업무	<p>○ 코로나 19 대응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 강화, 입장인원 게시, 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되므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취약지구 중심으로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치기 바람. * 3.29.~4.11. / 기본방역수칙 강화 4.5.부터 시행 -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게시면적, 업종의 범위 등 업주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시·군과의 밀접하고 신속한 업무 연계 대응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사회재난과 / 협조 :)</p>

익산시 고시 제2021-44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126-1번지 ~ 송학동 224-1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1호)사업
 - 사업의 명칭 :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L = 325m, B = 25m, A = 7,712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적 (㎡)	편입내역		지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번			지번	편입 지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	송학동	126-6	답	577	126-6	577		익산시					
2	익산	송학동	127-20	답	266	127-20	266		익산시					
3	익산	송학동	127-22	답	4	127-22	4		익산시					
4	익산	송학동	127-23	전	43	127-23	43		익산시					
5	익산	송학동	127-24	답	1	127-24	1		익산시					
6	익산	송학동	180-36	구거	724	180-36	724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7	익산	송학동	180-38	구거	36	180-38	36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8	익산	송학동	224-244	답	435	224-244	435		익산시					
9	익산	송학동	224-245	답	2,942	224-245	2,942		홍상철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0길 6 (인화동1가)	익산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98(인화동2 가) (동이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0	익산	송학동	224-246	답	203	224-246	203		김장기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15길 49-15(모현동 1가)				
11	익산	송학동	224-247	대	509	224-247	509		익산시					
12	익산	송학동	224-248	답	3	224-248	3		김장기	모현동1가 643-34				
13	익산	송학동	224-249	답	901	224-249	901		익산시					
14	익산	송학동	224-250	대	391	224-250	391		류천영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95-6 (송학동)	익산군산 축산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근저당권 지상권	
15	익산	송학동	224-251	도로	129	224-251	129		주식회사 세진실업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95-24, 1층(송학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 가) (익산지점)	근저당권	
16	익산	송학동	880-3	철도 용지	548	880-3	548		국	국토교통부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사

연번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	송학동	126-1	벚꽃나무		134주	익산시					
2	익산	송학동	127-7	물탱크	플라스틱	1.6㎡	익산시					
				울타리	철조망(H=1.2m)	11.2㎡						
3	익산	송학동	224-1 29	창고(컴프레서)	컨테이너(6*3)	1식	홍성철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0길 6 (인화동1가)	익산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98(인화동2가) (동이리지점)	근저당권	
				비닐하우스	철재	25㎡						
				울타리	철조망(H=2.4m)	327m						
				방조망	철재위그물막	68.8m						
				관정	농업용	1식						
				감나무		182주						
				고욤나무		29주						
				매실		43주						
				체리나무		8주						
				대추나무		12주						
				살구나무		3주						
				사과나무		10주						
				자두나무		3주						
				개복숭아		3주						
				이팝나무		6주						
				소나무		6주						
				무궁화		6주						
				피라칸사스		1주						
				포도나무		2주						
				장미		7주						
				개나리		10주						
				복분자		75㎡						
				블루베리		32주						
아로니아		32주										
오가피		5주										
구기자		30주										
보리수		3주										
석류나무		3주										
무화과나무		2주										
두릅나무		150주										
남천나무		1주										
목련		1주										
4	익산	송학동	224-2 10	사업장	조립식판넬	156.8㎡	류천영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95-6(송학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근저당권	
				화장실 및 사무실	조립식판넬	28.8㎡						
				창고	조립식판넬	13.4㎡						
				건사	블록판넬	4.8㎡						
				작업장	조립식판넬	39.3㎡						
				창고(컴프레서)	조립식판넬	3㎡						
				바닥포장	콘크리트	242㎡						

연번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익산	송학동	224-210	담장및대문	조립식(H=1.5m)	85㎡	류천영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95-6(송학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근저당권	
				매실		4주						
				대추나무		5주						
				사과나무		1주						
				호두나무		1주						
				감나무		2주						
				아로니아		10주						
				소나무		1주						
				장미		1주						
철쭉		1주										
5	익산	송학동	224-226	바닥포장	아스콘	129㎡	주식회사 세진실업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95-24, 1층(송학동)				
6	익산	송학동	222-247	사업장(2층)	조립식판넬	192.6㎡	익산시					
				창고	조립식판넬	20.8㎡						
				창고	조립식판넬	3.4㎡						
				가추	철제스레트	29.3㎡						
				담장	조립식 L=19.1m, H=1.5m	28.65㎡						
7	익산	송학동	880	창고	목제합판	4.2㎡	안진옥					

익산시 공고 제2021 - 899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소로1류805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805호)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규모	비 고
소로1류805호	익산시 목천동 65-1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04m, B=10m • 면적 : 2,0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농촌진흥청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3.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익산시 공고 제2021-924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3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 사업의 명칭 :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A = 3,095.2m², V = 10,000m³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7.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지적	편입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수도공 급시설	1	금마면 서고도리	산27-3	수도 용지	1,654.0	-	698.8	698.8	익산시	-
	2	금마면 서고도리	산27-9	임	1,588.0	-	63.8	63.8	익산시	-
	3	금마면 서고도리	산29-3	수도 용지	1,266.0	-	673.5	673.5	익산시	-
	4	금마면 서고도리	산33-6	수도 용지	2,366.0	-	1,621.4	1,621.4	익산시	-
	5	금마면 서고도리	산33-9	임	1,489.0	-	37.7	37.7	익산시	-
	합 계					8,363.0	-	3,095.2	3,095.2	-

정읍시 공고 제2021-581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위치	사업면적	시행기간	비고
정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정량리 일원	면적 : 65,307㎡ 사업규모 : 토지 15필지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	2019. 11 ~ 2021.12.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일체
- 보상대상 세부 목록은 열람장소에 비치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 04. 02. ~ 2021. 04. 16.(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정읍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63-539-5967)
-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열람장소 비치)
- 라.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붙임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결과 후 보상협의 예정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되 같은 법 제 68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나. 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장입금)

6.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고시·공고란 참조

7. 기타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물건별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별도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안전총괄과(☎063-539-59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서

번호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비고
	시/군	동/읍/면	지번				성명	주소	
1	정읍	산외면 정량리	1196	구	38,377	2,421	국유지	국(농림부)	
2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7-3	답	1,597	575	백학구	1060	
3	정읍	산외면 정량리	산173	임	2,777	18	국유지	정읍군	
4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5	답	853	182	유택상	수성동462구미빌라301	
5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3-1	전	681	94	김형식	364	
6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3-2	전	430	58	백학구	1060	
7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4	답	1,190	100	백학구	1060	
8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4	전	496	286	송창섭	988-3	
9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2	전	417	220	중희중외1인	325	
10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1	전	701	178	송재욱	978	
11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6	전	704	182	여산송씨지신공 파시자흙종중	981	
12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7-1	임	331	78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3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7-2	답	1,699	557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4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31	답	1,516	138	민상기	태인면 낙양길133-23	
15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8	답	1,569	32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6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5-1	답	823	102	송형섭	988-3	
17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5-2	답	1,569	203	여산송씨지신공 파시자흙종중	981	
계				필지	55,700	5,424			

【붙임】의견서

의견서	
1. 제 목	
2. 사업의 종류	정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건	
5. 기 타	
<p>「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정읍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정읍시 공고 제2021-58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2일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천도소하천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덕천면 도계리 1218	덕천면 도계리 862	542 (양안)	542 (양안)	-	2021. 4월	2022. 12월	재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소하천정비공사 시행 계획의 수립

□ 수립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수립개요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정읍시 덕천면 천도소하천의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지역으로 이수 치수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천 통수단면을 개수하여 재해예방 및 호우피해를 방지하여 농경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명 :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 0.27km
 - 토 공 : 흙깎기 : 3,536m³, 터파기 : 2,693m³, 되메우기 : 2,080m³
 - 호안공 : 식생호안블럭 2,222m², 석축 : 140m²
 - 교량공 : B O X 교 (12.0X2.7X6.6) - 1개소
 - 취입보공 : 취입보설치(8.40X0.50)-1개소
 - 부대공 : 1식

3.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정읍시장(건설과)

■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4. 소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21. 4 ~ 2022. 1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불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불임참조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 리 자 : 정읍시장(건설과)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 해당없음

8. 소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일원



9. 실시설계도서 열람 : 열람장소(정읍시청 건설과)에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공종	보 할	공 사 기 간 (일)					
		30	60	90	120	150	180
토공	44.9	44.9					
호안공	6.9		3.5	3.5			
교량공	46.4				15.5	15.5	15.5
부대공	1.8	0.30	0.30	0.30	0.30	0.30	0.30
계	100	45.2	3.8	3.8	15.8	15.8	15.8
누계		45.2	49.0	52.7	68.5	84.2	100

11.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비 고
계	650	50	600	-	
국 비					
도 비					
시 비	650	50	600	-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정읍시 건설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1. 3 ~ 2022. 12.
- 보상절차 및 방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정읍시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통지 예정임.

- 보상가 산정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정읍시 건설과(063-539-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고 제2021-589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관련 서류를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 나. 사업의 종류 : 축제 및 호안정비 1.193km 및 교량 9개소(추가 : 223m, 교량 1개소)
- 다. 사업예정지 :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99-2번지 일원
- 라. 사업규모 : 사업면적 65,307㎡ (추가 : 5,910㎡)
- 마. 사업시행기간 : 2019 ~ 2021년
- 바.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정읍시청)

2. 열람기간 : 2021.04.02. ~ 2021.04.16.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3. 열람장소 :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63-539-5967)

4. 의견사항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제시의견을 기재하여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붙임】 편입토지조서

번호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비고
	시/군	동/읍/면	지번				성명	주소	
1	정읍	산외면 정량리	1196	구	38,377	2,421	국유지	국(농림부)	
2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7-3	답	1,597	575	백학구	1060	
3	정읍	산외면 정량리	산173	임	2,777	18	국유지	정읍군	
4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5	답	853	182	유덕상	수성동462구미빌라301	
5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3-1	전	681	94	김형식	364	
6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3-2	전	430	58	백학구	1060	
7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4	답	1,190	100	백학구	1060	
8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4	전	496	286	송창섭	988-3	
9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2	전	417	220	종희종의1인	325	
10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51	전	701	178	송재욱	978	
11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6	전	704	182	여산송씨지신공 파시자흙종중	981	
12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7-1	임	331	78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3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7-2	답	1,699	557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4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31	답	1,516	138	민상기	태인면 낙양길133-23	
15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8	답	1,569	32	송기동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3-1한신연립 가 106호	
16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5-1	답	823	102	송형섭	988-3	
17	정읍	산외면 정량리	1045-2	답	1,569	203	여산송씨지신공 파시자흙종중	981	
계				필지	55,700	5,424			

【 붙 임 】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정량리 일원		
③ 사 업 자	정읍시장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1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정읍시장 귀하</p>			

남원시 공고 제2021-7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4월 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3-208	남원시 동충동54-17 ~ 남원시 동충동	L=298m B=4'6m	2019. 10 2020. 7	남원시	당초
				3-209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3-208	동충동 54-5 ~ 동충동 23-5	L=294m B=4'6m	2019. 12 2021. 12	남원시	변경
				3-209	동충동 52-23 ~ 동충동 4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제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5)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토지조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필지수(개소)	40	30	36	10	4	
	면적(m ²)	1,343	1,289	1,328	54	15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동충	45-6	45-6	도	196	1		국 (기획재정부)					
2	"	45-2	45-16	대	13	2		남원시					변경
3	"	45-5	45-17	대	146	1		남원시					변경
4	"	45-12	45-12	도	23	23		남원시					변경
5	"	45-10	45-20	대	142	30		남원시					
6	"	45-9	45-19	대	129	34		남원시					
7	"	45-8	45-21	대	119	1		남원시					
8	"	45-1	45-22	대	145	5	남원시 동충동	이*덕					
9	"	473	473	도	606	306		건설부					
10	"	474	474	도	221	22		기획재정부					
11	"	474-4	474-4	도	32	15		기획재정부					
12	"	40-2	40-5	대	172	133		남원시					
13	"	40-1	40-4	대	63	28		남원시					
14	"	472	472	구	468	52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	23-19	23-30	대	99	10		남원시					
16	"	23-6	23-29	대	177	1	남원시 동충동	장*동					
17	"	23-5	23-28	대	90	4		남원시					변경
18	"	54-3	54-17	대	248	24		남원시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19	"	54-15	54-18	대	36	4		남원시				변경
20	"	54-16	54-16	도	25	25		남원시				
21	"	53-6	53-9	전	721	45		남원시				
22	"	53-1	53-7	중	939	156		남원시				
23	동충	46-3	46-10	대	274	107		남원시				
24	"	46-7	46-13	도	35	6		남원시				
25	"	46-5	46-12	대	296	32		남원시				
26	"	48-13	48-17	대	13	2	남원시 동충동	오*근 외1인				
27	"	48-4	48-16	대	265	49		남원시				
28	"	49-21	49-23	대	70	8		남원시				
29	"	49-3	49-22	대	96	14		남원시				
30	"	49	49	도	172	7	금리	손*조				
31	"	22-7	22-7	도	26	17		남원시				
32	"	22-8	22-19	도	22	13		남원시				
33	"	22-2	22-18	대	164	1		남원시				
34	"	22-12	22-20	대	76	2		남원시				
35	"	46-4	46-11	전	245	40		남원시				
36	"	47	47-1	대	413	8		남원시				
37	"	50-3	50-6	대	278	46		남원시				
38	"	50-2	50-5	대	331	5		남원시				변경
39	"	52-23	52-44	대	325	55		남원시				
40	"	52-11	52-43	대	355	9		남원시				
		총계			8,266	1,343						

□ 물 건 조 서

입 면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 황 및 구 조	편 입 수 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22	남원시 동충동	472, 40-3	주택	연와조 스라브지붕(지하 포함)	70.32㎡	남원시 도량길	망 김*생				변경	
			창고	조적조 스라브지붕	4.0㎡							변경
			화장실	조적조 스라브지붕	1.8㎡							
			주택	조적조 스레트지붕	6.3㎡							변경
			창고(2층)	판넬조 판넬지붕	14.4㎡							
			까테기	경량철골 강판지붕	4.0㎡							
			차양	PC지붕	19.2㎡							
			바닥포장		45.0㎡							
			계단		1식							
			수도간		1식							
			장독대	벽체 포함	1식							변경
			창고	조적조 스라브 지붕	2.1㎡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5.8㎡							
			까테기	판넬지붕	9.0㎡							
			대문		1식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3.24㎡							
			감나무		1주							
			17건									
24	남원시 동충동	23-5	주택	목조 강판지붕	67.7㎡		남원시				변경	
			방 및 창고	목조 강판지붕	14.4㎡							
			까테기		3.08㎡							
			바닥포장		24.0㎡							
			수도간		1식							
			대문		1식							
			담장	전면	8.0m							
			담장	후면	9.0m							
			장독대		1식							
			화단		1식							
			감나무		1주							
			장미		1주							
			12건									

김제시 고시 제2021-38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4월 2일

I.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김제배수지)	김제시 서암동 산21-1번지 일원	-	증)9,971	9,971	금회	자연녹지지역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김제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면적 : 9,97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제시내 일원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였던 김제 배수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제실 및 관제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끝.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